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. 9. 18 선고 2018가단27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4. F

변론 종결 2019. 8. 21

판결 선고 2019. 9. 18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 강원 평창군 G 대 20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0, 11, 12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기)부분 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7, 8, 13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!-)부분 3㎡ 지상 건물(등기부상 표시: 강원 평창군 H건물I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99.54㎡)을 피고 주식회사 C는 7/13지분, 피고 D, E, F은 각 2/13지분 비율로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11. 28. 강원 평창군 G 대 20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강원 평창군 H건물 I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99.54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가 7/13, 피고 D, E, F이 각 2/13지분씩공유하고 있다.

다.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, 11, 12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기)부분 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7, 8, 13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匕)부분 3㎡ 지상에 소재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6호증의 각 기재,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평창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각 지분별로이 사건 건물 중 위 각 침범부분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,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침범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,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아가 피고 F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,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, 11, 12,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기)부분 5㎡ 및 같은 도면 표시 7, 8, 13, 7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한 선내 (ㄴ)부분 3㎡ 지상

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C는 7/13지분, 피고 D, E, F은각 2/13지분 비율로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박동규

별지